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1036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박정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영

피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이충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이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창주

3. C

변론 종결 2022. 5. 26.

판결 선고 2022. 6.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2019. 11. 4.자 건축주 명의변경계약은 328,901,431원 및 그중 304,842,425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1. 3. 17.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28,901,431원 및 그중 304,842,425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1. 3. 17.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8. 5. 4.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농업회사법인 D'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600,000,000원, 보증기간 2018. 5. 4.부터 2021. 5.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농업회사법인 D는 2018. 5. 1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F은행은 2019. 10. 1. 원고에게, 농업회사법인 D가 대출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여 2019. 9. 17.자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2020. 2. 27.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3. 13.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F은행에 보증금 598,533,188을 지급하였다.

나. 손해행위

1) 농업회사법인 D는 2017. 4.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허가권자: 인천시장,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G,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2) 이후 농업회사법인 D는 2019. 11. 4.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농업회사법인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농업회사법인 E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1. 12.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E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전득행위

1) 2021.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E,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명의의 2021. 1. 20.자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명의의 2021. 3. 2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라. 선행 민사사건

1) 원고는 F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 D(=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 E(= 수익자)를 상대로 농업회사법인 D와 농업회사법인 E 사이에 이루어진 위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9. '농업회사법인 D와 농업회사법인 E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328,901,431원 및 그중 304,842,425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1. 3. 27.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2021. 6. 25.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농업회사법인 E는 원고에게 328,901,431원 및 그중 304,842,425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1. 3. 27.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2021. 6. 25.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182, 이하 '선행 본안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20. 3. 5. 위 사해행위(=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 취소로 인한 건축주명의변경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농업회사법인 E를 채무자, 이천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허가권처분금지 및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0. 3. 1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카단10180, 이하 '선행 신청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가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농업회사법인 D와 농업회사법인 E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농업회사법인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농업회사법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를 각 전득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A, 피고 B는, 원고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선행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인 2020. 3. 5.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6.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선행 본안 사건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단지 농업회사법인 D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만 알았을 뿐이고, 위 처분 재산이 농업회사법인 D의 유일한 재산도 아니어서 농업회사법인 D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사안도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선행 본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21. 7. 9.에야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피고 C에 대하여는 직권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행 본안 사건과 이 사건은 모두 농업회사법인 D와 농업회사법인 E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가 수익자인지 전득자인지를 제외하고는 청구원인 내지 주장 내용이 동일한 점, ② 원고는 선행 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신청서에서 '농업회사법인 D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E와 통모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농업회사법인 E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D)와 수익자(= 농업회사법인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선행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인 2020. 3. 5.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농업회사법인 D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전서영

판사이용제

판사정우성

별지